







공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는다.

고 시

제847호 2022. 3. 2.(수)

서	기관의 장
<u> </u>	
결	

거창군 고시 제2022-27호 거창군관리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2
거창군 고시 제2022-28호 도로명주소 고시
거창군 고시 제2022-29호 붕괴위험지구(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4

공 고 거창군 공고 제2022-303호 거창군계획시설(교통시설중로3-12호선)사업 공사완료 공고 거창군 공고 제2022-317호 거창군계획시설(공공청사거창읍사무소 증축)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열람공고6 거창군 공고 제2022-327호 거창군계획시설(학교시설대학)사업 공사완료 공고 …………9 거창군 공고 제2022-336호 공시송달공고10 거창군 공고 제2022-344호 거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1 거창군 수도사업소 공고 제2022-10호 거창군 상수도 대행업체 모집공고 22 회 람

발 행 : 거창군 편 집 : 기획예산담당관 (055-940-3043, 행정 3043)

※ 거창군 공보는 거창군 홈페이지(http://www.geochang.go.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거창군 고시 제2022-27호

거창군관리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거창군관리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의 결정(변경)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경상남도 사무 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2년 3월 3일 거 창 군 수

1. 거창군관리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

가. 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조서

도면 구 분 표시 시설명 번호		Ą	년 적(m					
	포인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기 정	변 경	변경후	최 초 결정일	비고
신 설	11	거창 강남 배수지	거창읍 장팔리 708-1번지 일원	_	2,173	2,173	_	

나.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1	거창 강남 배수지	• 신설 • 위치: 거창읍 장팔리 708-1번지 일원 • 면적: 2,173㎡	• 거창읍 강남지역 일원의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하여 배수지를 군계획시설로 결정함

2. 관계 도면: 실음생략

3. 관계 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가능]는 거창군청 도시건축과(☎ 055-940-358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거창군 고시 제2022-28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 변경·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 3, 2,

거 창 군 수

○ 도로명주소 고시대상

- 건물번호 부여 :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상감악길 413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 (변경·폐지)사유	비고
	(별	도 열 람)		

○ 도로명주소 사용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 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과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 및 제8 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 이름,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 고시내용과 기타 사항은 거창군청 민원소통과(☎055-940-3313)로 문의하시거나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거창군 고시 제2022-29호

붕괴위험지구(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급경사지 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붕괴위험지구로 변경 지정·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지구명 구분		위치	지	정내용		지 정 사 유
시구병 구	1 표	71 /1	유형	급	면적(㎡)	
12.41.1	당초	거창군 주상면 남산리 산5-5일원	붕괴위험	D	3,313	붕괴위험지역 지정 관리 및 정비를
남산1	변경	거창군 주상면 남산리 산5-5번지 및 산10번지 일원	붕괴위험	D	7,620	통한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 주상면 남산리 산10번지 일원 4,307㎡ 추가 지정

- 붙임 1. 지형도면(당초) 1부.
 - 2. 지형도면(변경) 1부. 끝.

2022년 3월 3일

거 창 군 수

◉거창군 공고 제2022-303호

거창군계획시설(교통시설:중로3-12호선)사업 공사완료 공고

거창군 고시 제2021-159호(2021. 11. 18.)로 실시계획 인가된 거창군계획시설(교통시설:중로3-12호선)사업이 완료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24일 거 창 군 수

1. 사업의 위치 :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수월리 산33-19번지 일원

2. 사업의 개요

	사 업 명	위	۶	.] ಶ <u>ೌ</u>	}	규 .				
종류		면	리	구분	류별	번호	연장 (m)	폭 (m)	시행 구간	사업기간
교통 시설 (도로)	거창항노화 힐링랜드 인프라 구축사업	가조	수월	중로	3	12	340	5.4~ 11.7	가조면 수월리 산33-19번지 ~산199-2번지	2021.11.18 ~2022.09.31

3.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 소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 성 명:거창군수(산림과장)

4. 기타 문의사항은 거창군청 도시건축과(☎ 055-940-358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창군 공고 제2022 - 317호

거창군계획시설(공공청사:거창읍사무소 증축)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경상남도 고시 제1999-327(1999.12.29.)호로 최초 결정된 거창군계획시설(공공 청사:거창읍사무소)사업 실시계획 인가 신청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 용에 관한 법률』제9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2. 3. 2.

거 창 군 수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 820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군계획시설사업(공공청사)

○ 명 칭 : 거창읍사무소 회의실 증축 조성사업

3. 사업시행 규모 및 내용

가. 부지면적 : 7,011 m²

나. 사업개요

종류 위 치			사업규		최 초		
		결정면적		금회시행		의 조 결정일	비고
		설/8년석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공공청사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 820번지	7,011	7,011	300	473.89	경고 제1999-327호 (1999.12.29.)	

다. 세부내용

동별	층별	용도 구조	기정 연면적	증축 연면적 (변경)	철거	소계	비고
	지하1층	업무시설 철근콘크리트구조	265.81			265.81	
	지상1층	업무시설 철근콘크리트구조	896.36	109.50		1,005.86	창고증축
주1	지상2층	업무시설 철근콘크리트구조	460.65	364.39		825.04	주민자치위원 회실 회의실증축
	지상3층	업무시설 철근콘크리트구조	539.15			539.15	
부1	지상1층	업무시설 (창고) 철근콘크리트구조			144.60		창고철거
부2	지상1층	업무시설 (화장실) 경량철골구조	14.00			14.00	
합 계		2,175.97	473.89		2,649.86		

4. 사업 시행자

○ 주 소 :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 성 명 : 거창군수

5. 사업기간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2022. 12. 31.

6. 열람기간 : 신문게재 익일로부터 14일간

7. 열람장소 : 거창군청 도시건축과(☎055-940-3583)

8.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 붙임참조

9. 의견제출 및 열람: 사업시행에 관한 세부내용 및 관계서류는 위 열람 장소에 비치하고 토지·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과 주민에게 보이고 있으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 기간내에 의견서를 열람 장소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서식)
O 실시계획(안)에 대한 의견 및 그 사유 :
O 성 명:
O 연락처 :
O 기타 참고사항.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일련 번호	소 재 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편입 면적	- 1 ,		소유권	비고	
7.3	[번호			(m²)	(m²)	주소	성명	권리명	권리자	
합계	-	-	-	7,011.1	7,011.1					
1	거창읍 상림리	820	대	7,011.1	7,011.1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수			

◉거창군 공고 제2022- 327호

거창군계획시설(학교시설:대학)사업 공사완료 공고

거창군 고시 제2021-1호(2021.01.07.)로 실시계획 인가된 거창군계획시설(학교시설:대학)사업이 완료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사완료 공고 합니다.

2022년 3월 3일 거 창 군 수

- 1. 사업의 위치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송정리 540-1번지
-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군계획시설(학교시설:대학)
 - 명 칭: 한국승강기대학교 실습동 신축공사
- 3. 사업의 면적 및 규모
- 사업의 면적 : A=2,815m²
- 사업의 규모 : 건축면적 A=558.00㎡. 연면적 A=953.91㎡
- 4.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 소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운정1길 120
- 성 명: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 대표 김천영
- 4. 사업시행기간 : 2019. 01. 31. ~ 2022. 02. 28.
- 5. 기타 문의사항은 거창군청 도시건축과(☎ 055-940-358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창군 공고 제 2022-336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 제43조 및 제84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63조 및 제77조의2,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 및 같은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 정기 검사 안내문, 부과고지서, 자동차 검사명령서, 건설기계 정비명령서, 건설기계검사지시 최고 통지, 압류통지서 등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주소불명, 이사감, 폐문 부재 등의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검사유효기간 경과 차량은 빠른 시일 내에 가까운 자동차검사소 또는 지정 정비사업소에서 자동차정기검사를 받으시기 바라며, 정기검사를 기간 내에 받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2항 규정에 의거 최고 30만원의 과태료, 건설기계관리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최고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계속하여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번호판 영치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1항에 의거 직권말소 될 수 있음을 안내하오니 빠른 시일 내에 정기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1. 공 고 명 : 자동차 · 건설기계 검사안내 및 위반자 우편통지서 반송분 공시 송달
- 2. 공고기간 : 2022. 2. 25. ~ 2022. 3. 12.
- 3. 공고대상 : 72건(붙임내역 참조)
- 4. 문 의 처 : 거창군청 민원소통과 민원담당 (☎055-940-3293)

2022년 2월 25일

거 창 군 수

거창군 공고 제2022-344호

거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거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2월 25일

거 창 군 수

1. 자치법규명 : 거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O 투자기업의 적용범위를 정하여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고, 관내기업 지원범위, 포상금 지급기준 확대 등 투자유치 환경을 개선하여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를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투자기업 적용범위 신설(안 제2조의2)
 - 1) 거창군과 투자협약을 체결한 기업
- 나. 개별입주 기업 지원범위 확대(안 제16조)
 - 1) 도내 사업장의 관내 이전 시 보조금 지원 제한 준용 규정 삭제

- 다. 관내기업 지원기준 확대(안 제17조)
 - 1) 기존 사업장에 시설 추가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5퍼센트 지원
 - 2) 관내기업이 공장 신설, 투자금액 20억 원 이상, 신규채용 상시고용 인위 10명 이상일 경우 입지보조금. 고용보조금 지원
 - 3) 신청기한 확대: 1년 이내 → 1년 6개월 이내
 - 토지, 건물 등을 분양, 매입 또는 임대하기 위한 투자 계약체결일 로부터 1년 6개월 이내
- 라. 포상금 지급기준 상향조정(안 별표 6)
- 4. 일부개정규칙안 : 붙임
- 5. 입법예고 기간 : 2022. 2. 25. ~ 2022. 3. 16.(20일간)

6. 의견제출

- O 이 규칙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u>2022년 3월 16일까지</u>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미래 전략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등
 -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의견 제출방법: 서면, 전화, 팩스, 직접 방문 등
 - 주 소 : (우50132)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미래전략과
 - 전화번호 : 055)940-3822
 - FAX : 055)940-3679

7.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 미래전략과 투자유치담당☎(055)940-3822】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 규칙명 : 거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화번호:

규칙안 내용	의 견	刊	고

거창군 규칙 제 호

거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거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투자기업의 적용범위) 「거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에 관한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투자기업은 거창군과 투자협약을 체결한 기업을 말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거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에 관한 조례」(이 하 "조례"라 한다)"를 "조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체결할"을 "체결한"으로 한다.

제16조 중 "제3조제1항제1호·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부터 제4호"을 "제3조 제2항제2호·제3호"로 한다.

제17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 새로 매입한 토지 또는 기존 공장 부지에 사업장을 건축하고 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 사업장에 시설을 추가 설치하는 경우
- 3. 기존 사업장(시설을 포함한다)을 유지(폐쇄·매각·임대 및 축소의 금지를 말한다)하는 경우

제17조제2항 중 "있다."를 "있다. 다만 기존 사업장에 시설을 추가 설치하는 경우는 5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4항을 각각 제4항·제5항으로 하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이 되는 기업 중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할 경우 제4조와 제5조를 준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과 제4조는 중복지원 할 수 없다.

- 1. 새로 매입한 토지에 공장을 신설할 것
- 2. 제3조제2항제2호·제3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제17조제4항(종전 제3항) 중 "1년 이내"를 "1년 6개월 이내"로 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추진된 지원사업은 종전 규칙에 따른다.

신구조문 대비표

선 그 한				
현행	개정안			
<신 설>	제2조의2(투자기업의 적용범위)「거창 군 기업 및 투자 유치에 관한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투자기업은 거창군과 투자협약을 체결한 기업을 말한다.			
상) ① 「거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외 소재기업이 사업장을 거창군내(이하 "관내"라 한다)로 이전하는 경우 2. 기업이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업이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외 소재 기업이 사업장을 거창군내(이하 "관 내"라 한다)로 이전하는 경우 2. 기업이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 는 경우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보조 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 안에 부지매			
제16조(개별입주 기업에 대한 지원) 군수는 조례 제20조에 따른 투자기업 이 제3조제1항제1호·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경 우 제4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 용한다.	제16조(개별입주 기업에 대한 지원) 군수는 조례 제20조에 따른 투자기업 이 <u>제3조제2항제2호·제3호</u> 에 해당하 는 경우 제4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 을 준용한다.			

제17조(관내기업 지원) ① 조례 제22 조에 따라 관내 기업이 공장을 증설 하는 경우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관내에서 공장을 3년 이상 가동 중이고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인 기업
 새로 매입한 토지 또는 기존 공장부지에 건축하고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신 설>

3. 투자금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범위
는 투자금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10억원까지 보조할 수 있다.

<신 설>

- 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고 자 하는 자는 토지, 건물 등을 분양, 매입 또는 임대하기 위한 투자 계약 체결일부터 <u>1년 이내</u>에 별지 제7호서 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 ④ 승강기 외 관내 기업이 「거창군 승강기밸리 조성 및 지원 조례」에 준하여 지원을 요구할 경우에는 예산 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관내기업 지원) ① 조례 제22 조에 따라 관내 기업이 공장을 증설 하는 경우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 1. 관내에서 공장을 3년 이상 가동 중이고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인 기업
 2. 새로 매입한 토지 또는 기존 공장 부지에 사업장을 건축하고 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 사업장에 시설을 추가 설치하는 경우
- 3. 기존사업장(시설을 포함한다)을 유지(폐쇄·매각·임대 및 축소의 금 지를 말한다)하는 경우
- 4. 투자금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범위는 투자금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기업 당 10억원까지 보조할 수 <u>있다. 다만 기존 사업장에 시설을 추가 설치하는 경우는 5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한다.</u>
-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이 되는 기업 중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 할 경우 제4조와 제5조를 준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같은 조 제2 항과 제4조는 중복지원 할 수 없다. 1. 새로 매입한 토지에 공장을 신설할 것
- 2. 제3조제2항제2호·제3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 ④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고 자 하는 자는 토지, 건물 등을 분양, 매입 또는 임대하기 위한 투자 계약 체결일부터 <u>1년 6개월 이내</u>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승강기 외 관내 기업이 「거창군 승강기밸리 조성 및 지원 조례」에 준하여 지원을 요구할 경우에는 예산 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별표 6]

투자유치 포상금 지급기준

1. 일반인(개인·단체·기관·기업 포함)

투자유치금액	지급기준율	상한액
20억원 이상~100억원 이하	0.001 투자금액× <u>0.0015</u>	1,000만원 <u>1,500만원</u>
100억원 초과~500억원 이하	1,000만원 0.0004 <u>1,500만원</u> +(투자금액-100억원)× <u>0.0005</u>	2,600만원 <u>3,500만원</u>
500억원 초과~1,000억원 이하	2,500만원 0.0003 <u>3,500만원</u> +(투자금액-500억원)× <u>0.0004</u>	4,000만원 <u>5,500만원</u>
1,000억원 초과	5,000만원 0.0002 5,500만원+(투자금액-1,000억원)×0.0003	2억원

2. 공무원

투자유치금액	지급기준율	상한액
20억원 이상~100억원 이하	0.0002 투자금액× <u>0.0004</u>	200만원 <u>400만원</u>
100억원 초과~500억원 이하	200만원 <u>400만원</u> +(투자금액-100억원)× <u>0.00005</u>	350만원 <u>600만원</u>
500억원 초과~1,000억원 이하	350만원 0.00003 <u>600만원</u> +(투자금액-500억원)× <u>0.00004</u>	500만원 800만원
1,000억원 초과	500만원 0.00002 800만원+(투자금액-1,000억원)×0.00003	2,000만원 <u>3,000만원</u>

※ 외국인투자기업 유치 시는 원화로 환산한 금액임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 2022. 1. 13.]

제29조(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거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에 관한 조례

[시행 2020. 2. 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투자기업"이란 거창군내(이하 "관내"라 한다)에서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사업장의 용도로 변경 또는 폐건물을 사업장 용도로 매입하 여 사업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기업을 말한다.
- 2. "사업장"이란 투자기업이 사업을 하기 위하여 생산활동을 하는 공간을 말한다. 다만, 제조업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 3. "외국인투자"란 「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 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
- 4. "외국인투자기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한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
- 5. "기반시설"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12조(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 등) ① 군수는 거창군외(이하 "군외"라 한다) 소재 공장의 관내 유치와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에게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로 지정을 신청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된 지방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 2. 지역균형개발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 ②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에 입주하는 공장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입지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시설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군외에 소재하는 공장을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로 이전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이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의 분양이 완료된 경우 또는 존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지정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 내용·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개별입주 기업에 대한 지원)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 외에 사업장을 신설 및 이전하는 경우에도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관내기업 지원) ① 관내기업이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와 그 밖에 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계획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내용·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9조(투자유치 기여자 보상) 군수는 국내외 투자 및 기업 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자(개인이나 단체·기관·기업·공무원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으며, 공무원의 경우 인사상 우대를 할 수 있다.

□ 거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1. 3. 3.]

제3조(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 지원대상) ①「거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 1.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외 소재 기업이 사업장을 거창군내(이하 "관내"라 한다)로 이전하는 경우
- 2. 기업이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1.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 안에 부지매입 또는 임차계약을 체결할 기업일 것
- 2.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일 것. 다만, 연구소·ICT기업·사회적기업·연구개발업을 주로 하는 기업은 10억원 이상일 것
- 3.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고용인원(기업이 도외에 소재한 사업장을 도내로 이전하는 경우 기존 고용인원을 포함)이 10명 이상일 것
- 4. 기업이 도내의 사업장을 도내로 이전하는 경우가 아닐 것. 다만, 도내의 다른 시·군에서 관내로 이전하여 기존의 사업장과 비교해 자산가치 및 고용인원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그 증가하는 부분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음
- 5. 여성대표기업, 여성고용우수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 장애인고용기업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보조금 지원 시 우대할 수 있음
- ③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되는 기업이 군에 투자할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입지보조금)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3조에 따라 지원 대상이되는 기업이 부지를 매입할 경우 부지 매입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5억원(도의 재정으로 부담하는 비용(이하 "도비"라 한다)을 포함한다)의 한도로 지원할 수있으며, 제조업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공장 면적률에 따른 공장입지 기준면적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투자계획을 완료한 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고용보조금)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지원대상이 되는 기업이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상시고용인원을 고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고용보조금(도비를 포함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 1. 새로 사업장을 설치할 것
- 2. 10명 초과 상시고용인원 1명당 월 100만원씩, 12개월 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3억 원까지
- ② 고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투자계획을 완료한 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기한은 사업개시일부터 5년 이내로 한다.

거창군 상수도 대행업체 모집공고

거창군 상수도급수조례 제10조 및 거창군 상수도급수공사 대행업자 지명규칙 제3조 규정에 따라서 급수공사를 시행할 거창군 상수도 대행업체를 모집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25일

コ シュー

力 な 七 午
□ 지정기간 : 2022. 4. 12. ~ 2024. 4. 11.(2년간)
□ 신청자격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별표1'에 의한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으로 등록된 업체
□ 구비서류
가.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 신청서 1부(붙임1. 구비서류 포함) 나. 이력서 1부
다. 종업원 신고서 1부
라. 재산증명서 1부
마. 공사용 기계공구 명세서 1부
바.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사.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상·하수도 설비전문공사 면허증사본
□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
가. 공고기간 : 2022. 02. 25. ~ 2022. 03. 16.(20일간)
※ 서류접수일시 : 2022. 03. 16. 09:00 ~ 18:00
나. 신청장소 : 거창군 수도사업소
다. 신청방법 :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 선정방법
가. 선정기간 : 2022. 03. 17. ~ 2022. 03.23. (7일간)
나. 선정방법
- 거창군 상수도 급수공사 지명규칙 제4조 2항 '별표1' 기준 충족 접수자 중
- 거창군 상수도 급수공사 지명규칙 제4조 2항 '별표2' 기준에 따라 평가
 상위 고득점 업체 3개소 선정(1개업체 신청시 1개 업체만 선정)
□ 기타사항
가. 대행업체가 시행할 급수공사 및 긴급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후 신청서 제출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 수도사업소(☎940-84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수도급수공사 대행업체 지정신청서 1부.
2. 수도급수공사 대행업체 지정기준 1부.
3. 수도급수공사 대행업체 지정심사기준 1부. 끝.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 신청서

상 호		대 표 자	성별	□남 □여
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	전 화 번 호		
영업 소재지				

「거창군 상수도급수공사 대행업자 지명규칙」제3조에 따라 대행업자 지정을 받고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거창군수 귀하

【구비서류】

-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의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증 사본 1부
- 2.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필요시) 1부
- 3. 시공기술 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협회발급) 1부
- 4. 사무실, 창고 등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서류 각 1부
- 5. 공사용 장비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서류 1부
- 6. 경영상태(부채비율, 유동비율)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서류(협회발급) 1부
- 7. 최근 3년간 상수도분야 시공실적 증명서(협회발급) 1부

붙임2- [별표 1]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 기준(제4조 관련)				
구 분	신 청 자 격 조 건		비고	
1. 건설업의 종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건설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			
2. 시공 기술자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기준			
3. 영업시설	사무실		「건축법」및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적합 한 건축물	
	명 칭	규 격	수 량	
	작업차량(덤프트럭)	1톤 이상	1대 이상	
	굴삭기	0.2m [®] 이상	1대 이상	
	유압식 브레이커	20kg 이상	1대 이상	
	포장절단기	120mm 이상	1대 이상	
 4. 장비 및 공구	핸드롤러	650kg 이상	1대 이상	
	다짐기(콤펙타)	50kg 이상	1대 이상	
	전기임펙트	40mm 이상	1대 이상	
	발전기	5kw 이상	1대 이상	
	엔진양수기 및 수중모타	50mm 이상	총 2대 이상	
	새들천공기	13-50mm	1대 이상	
	해빙기	-	1대 이상	
	유선전화 및 휴대전화	-	각 1대 이상	
5. 그 밖의 시설	PE 안전휀스	-	10개 이상	
	칼라콘 및 걸이대	야광	10개	
	공사홍보 표지판	60×90cm	5개	
	공사안내 표지판	60×90cm	5개	
	공사안내 삼각표지판	90cm	5개	

붙임3 - [별표 2]

상수도 대행업 선정 평가기준(제4조 관련)				
항 목	기 준		배 점	
	· 총 계		100	
	합 계		35	
1 기코노크		3억원 미만	20	
1. 시 공능 력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3억원 이상~6억원 미만	25	
(35점)	상수도 분야 공사실적	6억원 이상~10억원 미만	30	
		10억원 이상	35	
	합 계		25	
	소 계		10	
	시공기술자 보유	기준보유	4	
2. 기 술능 력	추가 시공기술자 보유 (공고일 3개월 이전 채용자에 한함)	1인당 가산점 2점(총6점)	6	
[25점] (25점)	소 계		15	
(23-1)		5년미만	3	
	시공기술자의 경력	5년이상~10년미만	6	
	(시공기술자 경력 전체 합산)	10년이상~15년미만	9	
		15년이상~20년미만	12	
	중) - 게	20년이상	15	
	합 계 소 계	20 10		
	조 게	160%이상	1	
	부채비율=최근년도 해당업체 부채비율	130%이상~160%미만	3	
	/업종별 평균 부채비율	100%이상~130%미만	5	
0 30111511	※ 전문건설협회 발급기준	50%이상~100%미만	5 7	
3. 경영상태		50%미만	10	
(20점)	소계		10	
		80%미만	1	
	유동비율=최근년도 해당업체 유동비율	80%이상~100%미만	3 5	
	/업종별 평균 유동비율 ※ 전문건설협회 발급기준	100%이상~130%미만		
		130%이상~160%미만	7	
	N	160%이상	10	
	합계		20	
4. 장비 및 공구 (20점)		기준 보유	20	
	"별표 1"의 장비 및 공구 보유	"별표 1의 보유기준 중 장비가 임차일 경우 감점적	대당 +1가산 (최고 가산점+5)	
		용하고, 가점은 굴삭기,덤 프트럭에 한하여 적용	대당 -1(임대시) (최고 감점-5)	

[※] 동점자 발생시에는 기술능력, 시공능력, 경영상태, 장비 및 공구의 배점 항목 순으로 최고득점자를 우선한다.